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마련(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거”, “기타” 등을 “따라”, “그 밖에”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다음의 사항은 명확한 표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제3조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제8조제1항의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

붙임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